

(뒤쪽)

구비서류	<p>제출서류</p> <p>1. 발급신청의 경우</p> <p>가. 「선박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※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.</p> <p>나. 「선박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</p> <p>다. 「해사안전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</p> <p>라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</p> <p>마.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(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재교부신청의 경우</p> <p>가.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</p> <p>1)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</p> <p>2)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. 다만,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,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나.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</p> <p>1) 선박이력기록부 사본</p> <p>2)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</p>	<p>확인 사항</p> <p>선박국적증서</p>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